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고 위 공 무 원 단 인 사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평정 최상위자의 하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전보를 제한하는 전보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대상자 선발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르도록 했던 규정을 개선하여 부처가 자율적으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 전보의 제한 규정 폐지(현행 제19조 삭제)

최근 1년간 근무성적평정 최상위자의 하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전보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부처의 인사운영상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전보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

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대상자 선발기준 자율화(안 제8조)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대상자 선발시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을 따르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부처별 인사운영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하고자 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 간소화(안 제7조)

3급 공무원 또는 4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을 마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경우 즉시 고위공무원단후보자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을 완화하여 임용권자의 임용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예정 : 2022. 10. 21. ~ 11.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3급 공무원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7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선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제7호 중 “제45조제3항제6호 또는 제7호”를 “제45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① 제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치고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된다. 이 경우 재직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재직연수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①-- ----- ----- ----- ----- ----- ----- ----- ----- ----- -----
1. 3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1. 3급 공무원
2. 3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 2년 미만 재직하거나 4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4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여 20년 이상이 되는 사람. 다만, 해당 기간 중 퇴직 후 공무원으로 다시 임명된 경우에	<삭 제>

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공무원으로 다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거나 직무의 성격상 관련 업무 경력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위에 임용하기 위하여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사람	<삭 제>
다.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법 제28조의5에 따라 공모 직위로 지정·운영되는 직위에 응모하는 사람	<삭 제>
라.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사람	<삭 제>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선발 기준 및 방법에 따	② ----- 해당 ----- -----

라 해당 기관의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별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정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 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 ----- -----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보직관리의 기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무원단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18조(보직관리의 기준)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소속 장관별로 초과 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임용령 <u>제45조 제3항제6호</u> 또는 <u>제7호</u> (해당 직위 또는 그 기관의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유로 그 초과 현원과 교체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7. ----- <u>제45조 제3항제4호</u> ----- ----- ----- ----- ----- -----
8.·9. (생략)	8.·9. (현행과 같음)

제19조(전보의 제한) 고위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최근 1년 간의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상위 등급의 평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재직 중인 직위보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직제의 변경 또는 정원의 감축 등으로 재직 중인 직위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가 같은 직위의 수가 감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연 락 처	(044) 201 - 8327